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나20073(본소), 2020나20080(반소) 판결
[구상금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박순원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서소현

변론 종결 2021. 3. 17.

판결 선고 2021. 3. 31.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소1628439(본소),
2019가소2332625(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196,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1. 13. 02: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대성로 남궁병원사거리를 E병원 방면에서 금천동 방면으로 지나가던 중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으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원고차량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는데,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0.094%로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탑승자 F은 골반 골절, 하악관절의 강직과 측절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상 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었다.

라. 이후 F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3897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0.경 원고가 F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8. 9. 11. F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그 무렵까지 총 326,952,580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F과의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7.경 피고를 상대로 G(이하 'G'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구상금에 관한 심의를 청구하였고, G은 2019. 2. 11.경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0 : 0으로 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재심의를 거친 이후에도 G은 2019. 4. 1.경 위 결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3. 3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으로서 합계금 5,196,9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바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0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음주운전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2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피고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으로서 F의 장애등급에 따른 책임한도액 2,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F에게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시킨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주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5,196,9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 및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사거리에 이르렀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왕복 5차로의 도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거리에 이르렀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반면, 원고 차량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해 보이는 점, ② 교차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의 진입이 가능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교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들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점(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 14269 판결 등 참조), ③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의 주행 속도는 이 사건 도로의 제한 속도인시속 60km 이내로서 시속 51km 내지 시속 60km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급제동을 하였더라도 제동거리는 $41.31\text{m} [= \text{반응거리}54\text{m} [= \text{반응거리제동거리}26.01\text{m} [= (51 \div 10)^2]] \text{ 내지 } 15.3\text{m} [= 51 \times 3 \div 10] + 18\text{m} [= 60 \times 3 \div 10] + \text{제동거리}$

36m $\{=(60\div 10)^2\}$ 가 되는바, 이 사건 교차로가 원고 차량주행 방향으로 왕복 2차로, 피고 차량 주행 방향으로 왕복 5차로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급제동을 하였더라도 원고 차량과의 이사건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 운전자의 그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20%임을 전제로 피고 차량 운전자인 H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662072호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위 법원이 2018. 3. 6.자로 결정한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H의 손해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피고로서는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확정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내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달리 다룰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주장하나,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H사이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등 참조)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0%로 봄이 타당하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공동 과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원고는 피고 차량의 공동 과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로부터 구상금 5,196,990원을 수령하였는바, 위 구상금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5,196,99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위 구상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6. 4. 26.부터 이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재철, 판사 문현정, 판사 강지현